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4년 8월 23일

나. 제출일자 : 2024년 8월 26일

3. 제안이유

행정안전부가 규약명 및 제2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2024년 11월 30일까지 변경하는 조건으로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조건부 승인’ 함에 따라, 규약명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처리 개시일 및 R&D 구축 사무의 근거법령을 정정하고자 이 규약을 개정함

4. 주요내용

가. 규약명 및 제2조 명칭을 ‘충청지방정부연합’에서 ‘충청광역연합’으로 변경함

나. 부칙 제2조 사무처리 개시일을 ‘고시 후 6개월 이내’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내’로 변경함

다. 별표 1의 12-나 초광역 R&D 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근거 법령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음창규)

가. 이 개정규약안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조건부 승인’¹⁾함에 따라 규약명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 사무처리 개시일 변경 및 R&D 구축 사무의 근거법령을 정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나. 개정안 제2조는 행정안전부가 ‘조건부 승인’의 조건으로 제시한 ‘규약명 및 규약 제2조 명칭을 사무처리 개시 전까지 변경한다’는 사항을 반영, “지방정부” 대신 “광역”으로 변경하여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충청광역연합”²⁾으로 수정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다.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사무처리 개시’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처리 개시 기준이 되는 의회 개원일은 2024년 10월 말 또는 12월 16일 이후에 가능하다는 실무적 검토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질의결과를 반영하여 사무처리 개시일을 “고시 후 6개월 이내”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변경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같은 해 12월 31일 이전에 의회 개원이 완료되어야 실효성 있는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음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 2618 (2024. 5. 20.)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조건부 승인 통보

◇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승인한다. 규약명 및 규약 제2조 명칭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 개시 전까지 변경한다.(이행 기간 : 2024. 11. 30.까지)
※ (조건부 사유) ‘지방정부’ 용어 사용의 헌법·법령 규정 취지 위배 및 혼선 우려
※ 이행 기간까지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규약 효력 소멸

2) 지난 6월 7일, 4개 시·도는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승인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4년도 제1회 충청권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가 연합하여 하나로 나아가자”는 의미로 “충청광역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합의함

라. **별표 1**의 구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 중 제12호나목의
개정은 규약 제정 당시부터 잘못 인용한 법률 규정을 바로잡은 것
으로 적절한 조치임

마. 이 규약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조건부 승인의 이행 기간
(2024. 11. 30.)까지 완료하기 위해서는 제420회 임시회(9. 2. ~ 9. 11.)
또는 제421회 임시회(10. 10. ~ 10. 18.)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임